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
------------	----

제출년월일 : 1999. 12. 16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 안 이 유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감면대상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구로 이전(공장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나. 감면내용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

다. 감면시한 : 기업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 운영

라. 추징대상

-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3.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9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공장은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7조의5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p> <p>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이전(공장은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현 행	개 정 · 안
	<p>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 역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공 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 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 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 상으로 본다.</p>